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2001. 12. 13

외환 시장 운영 협의회

차 례

서 문

제I장 일반적인 규범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역할과 책임

제 4 조 거래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제 5 조 규범 준수 의무 및 위반행위 처리

제 6 조 전자방식의 거래

제 7 조 비상대책

제 8 조 리스크관리

제 9 조 회계처리와 감사

제II장 윤리에 관한 규범

제 10 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 11 조 브로커를 통한 거래와 관련된 비밀의 유지

제 12 조 허위정보나 소문의 유포행위 금지

제 13 조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의 제한

제 14 조 신원이 불명확한 거래당사자와의 거래

제 15 조 사기 등 형사관련 범죄행위의 방지

제 16 조 자금세탁 거래의 방지

제 17 조 향응 및 선물의 수수

제 18 조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제 19 조 약물,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의 남용 금지

제III장 거래원칙에 관한 규범

제 20 조 거래 권한의 부여

제 21 조 거래조건 등의 문서화

제 22 조 선행조건의 사전고지

제 23 조 거래대화내용의 녹음

제 24 조 거래중개

제 25 조 거래상대방 이름의 공개

제 26 조 거래당사자 교체

제 27 조 스톱핑

제 28 조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거래

제 29 조 손절매 주문 및 포지션 파킹

제 30 조 정확한 거래 용어의 사용

제 31 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원칙

제IV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

제 32 조 거래시간

제 33 조 정규시간 또는 지정된 장소외 거래

제 34 조 가격제시 등 거래주문

제 35 조 거래체결

제 36 조 거래확인

제 37 조 표준결제일

제 38 조 임시휴일

제 39 조 지급결제

제 40 조 지원부서(back office)의 분리

제 41 조 서울외환시장에서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화자금거래

제 42 조 국제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 등의 준용

부 칙

<부 록> 용어 정의

서 문

이 규범은 서울외환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외국환은행의 딜러, 중개 회사의 브로커, 외환당국의 실무진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요국제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거래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범의 목적은 외국환은행, 중개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에 소속되어 외환거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거래원칙과 최선의 관행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외환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관행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외국환은행의 딜러와 중개회사의 브로커는 이 규범을 통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와 브로커들이 이 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지침들은 현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물론 앞으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 그리고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와 브로커들은 이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관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거래행위와 시장관행의 다양한 면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범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제1장 일반적인 규범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거래행위의 기준을 확립하고 전문가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시장참가자들간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관행에 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포함) 등 주요 시장참가자와 중개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거래담당자는 현물환, 선물환, 외화자금거래, 스왑, 옵션 등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수행할 경우 이 규범의 내용 및 기본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역할과 책임

1.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회사 자체는 물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담당자들이 이 규범의 내용에 부응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서울외환시장이 높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담당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의 거래 활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딜러와 브로커 및 지원부서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4.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가 시장관행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행위가 자신은 물론 회사의 책임임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는 딜러로 하여금 자신의 훈련이나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브로커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며, 브로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5.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딜러와 브로커들이 이 규범을 숙지하고 있는 지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6.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딜러 또는 브로커의 전직과 관련하여 다른 외국환은행이나 중개회사로부터 전직 대상자의 품행, 업적, 사고경력 등 인적 정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다른 외국환은행 또는 중개회사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거래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1.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나 고객에 대하여 자기가 소속한 회사의 업무 내용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2. 딜러와 브로커는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관리자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를 수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나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체결 전에 개별 거래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거래활동에 관한 비밀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브로커는 고객과 중개회사간에 별도의 중개계약이 있더라도 특정 고객이 부당하게 유리하도록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규범의 준수 의무 및 위반행위 처리*

1. 외환시장에서의 거래행위가 최대한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은 이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이 규범의 내용 또는 기본정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당사자와 상호협약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이 규범을 위반한 외국환은행이나 중개회사는 위반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딜러와 거래상대방 또는 제 3 의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V - 4 Compliance & Complaints) 참조

제 6 조 전자방식의 거래

1. 전자통신망, 자동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거래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래참가자는 반드시 자신의 패스워드를 사용할 것

- 거래용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개별 패스워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거래참가자는 최신의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부정보에 접속할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의 교육 훈련,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은 전자거래시스템을 내부통제시스템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신용 및 여타 리스크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상대책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거래실행부서(front office)와 지원부서(back office)의 비상대책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재난이나 위기시에도 거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충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조 리스크관리

1. 외국환은행과 거래담당자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거래리스크는 물론 회계 및 조세처리 등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은 구체적인 업무분장이나 기능의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자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객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계처리와 감사

1.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통화, 금액, 가격, 거래일, 결제일 등에 관한 일상적인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 및 거래담당자는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내. 감사 및 관리자가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II장 윤리에 관한 규범

제 10 조 비밀유지의 의무

1. 비밀의 유지와 고객의 익명성 보장은 외환시장의 거래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딜러는 자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고객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 관련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에 대하여 비밀의 식별과 처리에 관한 적절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거래담당자들이 비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리자는 고객이 딜링 룸을 방문할 경우 비밀관리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예약에

의하며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거래담당자가 딜링 룸을 방문하여 자기회사를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브로커를 통한 거래와 관련된 비밀의 유지

1. 딜러와 브로커는 비밀 유지를 위해 공동 책임을 진다. 브로커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신원 공개에 관한 허락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딜러는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항상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브로커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거래당사자나 거래상대방의 이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브로커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체결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3. 딜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득, 협박 또는 대가 지불 약속 등을 통해 브로커로 하여금 비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딜러나 브로커가 상대방의 딜링 룸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기회사 및 상대방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며, 딜러는 브로커의 딜링 룸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I - 7 Confidentiality) 참조

제 12 조 허위정보나 소문의 유포행위 금지

1. 딜러와 브로커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 없으며,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거론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시장참가자들은 공중기관이나 다른 시장참가자에 대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정보나 편파적인 정보를 고객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I - 8 Misinformation and Rumours) 참조

제 13 조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의 제한

1. 딜러는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딜러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사적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신원이 불명확한 거래당사자와의 거래 *

1. 딜러는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신용위험,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거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II - 4 Dealing with unidentified principals) 참조

제 15 조 사기 등 형사관련 범죄행위의 방지

1. 외환시장 참가자는 사기 등 범죄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녹음이 되지 않는 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결제지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자금 수취인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 경우
- 거래체결 후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딜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딜러나 브로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딜러나 브로커가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금세탁 거래의 방지 *

1. 외국환은행은 거래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고객과의 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딜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할 경우 내부감사 담당자 및 자금세탁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개회사는 소속직원들이 자금세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중개되고 있는 지를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ACI 표준 행동규범 (Chapter II - 4 Money laundering) 참조

제 17 조 향응 및 선물의 수수

1. 외환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딜러, 브로커 및 고객간의 지나친 향응제공이나 선물의 수수는 지양되어야 한다.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향응제공 및 선물 수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담당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거래담당자들로부터 향응과 선물의 내용, 빈도 및 금액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점검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들이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나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개회사의 관리자에게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8 조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1. 외환시장 참가자간의 도박, 내기 등 사행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이나 중개회사의 딜링 룸 내에서는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약물,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의 남용 금지 *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약물,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증상과 그 폐해에 대하여 거래담당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중독성 물질의 남용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거래담당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I - 1 Drugs & Abused substances)

참조

제III장 거래원칙에 관한 규범

제 20 조 거래 권한의 부여

1.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딜러와 지원부서 담당자의 거래권한 및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관리자가 거래담당자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절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거래지침
- 거래권한 위임 대상자 및 거래 허용 상품
- 포지션 한도, 손절매 한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한도 등
- 거래확인 및 결제절차
- 거래상대방(브로커, 외국환은행 등)과의 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 - 1 Authorization & Responsibility for dealing activity) 참조

제 21 조 거래조건 등의 문서화*

1. 거래당사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거래 상품 등 거래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거래 성립 후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조건 등의 문서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 - 2 Terms & Documentation) 참조

제 22 조 선행조건의 사전고지*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 체결에 필요한 선행조건(qualifying condition)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 - 3 Qualifying & Preliminary dealing procedure) 참조

제 23 조 거래대화내용의 녹음

1.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테이프 레코더 등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거래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녹음장치를 처음 설치하거나 새로운 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할 경우, 이들에게 대화의 내용이 녹음됨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거래 내용을 기록한 녹음 테이프 등은 사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4. 분쟁이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녹음 테이프 등은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 24 조 거래중개

1.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딜러와 브로커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
2.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거래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3.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 담당자들이 딜러와 브로커간의 관계에 대한 내부방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소속 딜러의 브로커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거래가 특정 브로커에 부당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브로커로 하여금 모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거래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브로커는 딜러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확정가격(firm price)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I - 1 The role of brokers & dealer) 참조

제 25 조 거래상대방 이름의 공개*

1. 브로커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를 체결할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거래상대방의 이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거래당사자와 브로커는 제3자에 대하여 세부 거래내역을 항상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달라는 거래를 기피하고 싶은 상대방이 있을 경우 이를 브로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브로커는 고객의 이익과 지시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브로커가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양 당사자에 공개할 때에는 가급적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공개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할 경우 브로커는 거절한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I - 4 Passing of names by brokers) 참조

제 26 조 거래당사자 교체

1.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신용한도부족 등으로 거래성립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격한 거래당사자를 제 3 자로 교체할 수 있다.
2. 거래상대방이 교체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세부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일반적인 거래 지침과 절차에 따라 거래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당사자 교체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브로커의 중개편의를 위해, 거래를 기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명단을 중개회사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딜러는 거래상대방 교체와 관련하여 브로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 27 조 스테핑*(stuffing)

* 중개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래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1.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스테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소속직원들이 행동 규범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스테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스테핑'이 발생할 경우 딜러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개회사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스테핑'이 발생한 경우 중개회사는 관련 외국환은행과 접촉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이 요청할 경우

협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련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스터핑' 발생시 중개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시장가격으로 필요한 거래를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스터핑'에 관련된 딜러는
당초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딜러와 브로커는 '스터핑' 발생 당일에 관련 당사자의 이름,
발생 사유, 손익 규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스터핑' 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스터핑' 발생에
따른 차액정산내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차액정산이 지나치게 빈번히
발생하거나 누적 정산규모가 과도한 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거래

1. 거래시점의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손익 은폐, 사기, 부당한 신용한도 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거래시점의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관리자는 은행의 방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II - 1 Dealing at non current rates) 참조

제 29 조 손절매 주문 및 포지션 파킹

1. 손절매 주문을 내거나 받는 거래당사자들은 쌍방이 손절매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손절매 주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손절매를 주문한 당사자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딜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지션을 파킹(parking)하여서는 아니 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 - 4 Stop-loss orders) 참조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 - 5 Position parking) 참조

제 30 조 정확한 거래 용어의 사용

1.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소속직원들이 이 규범의 부록에 예시되어 있는 정확한 거래용어를 사용하는 등 항상 전문가답게 거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다수의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외환시장간 이동이 빈번한 딜러 및 브로커로 하여금 각각의 외환시장에서 사용되는 거래용어의 차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필요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1 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원칙

1. 서울외환시장에서의 외국환은행간 외환거래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환을 거래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외국환중개회사에 당일중 통보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은행과 외국환중개회사간 설치된 전화 또는 전용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중개회사에 거래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거래원만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제IV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

제 32 조 거래시간

1. 국제 외환시장의 공식적인 거래시간은 시드니 시간 월요일 오전 5 시로부터 뉴욕 시간 금요일 오후 5 시까지이다. *

2. 1 항의 공식거래시간 외에 체결된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3. 서울외환시장에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토요일제외)의 오전 9 시 30 분부터 12 시, 오후 1 시 30 분부터 4 시 30 분으로 한다.

다만, 거래당일이 결제일인 현물환(Value today)의 거래시간은 오전 9 시 30 분부터 10 시 30 분으로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Chapter I-2 Market opening & Closing hours) 참조

제 33 조 정규시간 또는 지정된 장소외 거래*

1. 정규거래시간이 아니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이동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정규시간이 아니거나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거래할 수 있는 딜러를 지정하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신속한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 - 1 After hours/24 hours & Off premises dealing) 참조

제 34 조 가격제시 등 거래주문

1. 모든 시장참가자는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확정가격(firm price)인지 또는 참고가격(indicative price)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브로커에 의해 고시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금액에 대한 확정가격으로 간주된다.*

2. 거래당사자가 확정가격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의무가 있다.*
3. 브로커는 딜러가 제시한 확정가격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시장 상황이 변동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서울 외환 시장에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원화를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로 한다.
5. 서울 외환 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의 최저금액은 미국 달러화의 경우 50 만달러, 일본 엔화의 경우 10 백만엔으로 하며, 거래단위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10 만달러의 배수, 일본 엔화의 경우 10 백만엔의 배수로 한다.
그리고, 거래주문의 가격단위는 현물환 및 선물환거래의 경우 10 전, 스왑거래의 경우 1 전으로 한다.

* ACI 표준 행동규범 (Chapter VII - 3 Dealing quotations) 참조

제 35 조 거래체결*

1. 거래당사자는 가격 등 주요한 거래조건들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외환거래에 관한 구두합의는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조건을 협의할 경우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브로커는 거래가격을 제시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거래체결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VII-2 Consummation of a deal) 참조

제 36 조 거래확인

1. 외국환은행은 외환거래 체결 후 지체없이 전화 또는 텔렉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및 중개회사와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거래확인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2. 지원부서(back office)는 접수된 거래확인서를 즉시 점검하여, 당초 거래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외국환 은행간에 표준결제지시서(SSI)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7 조 표준결제일

1.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서울외환시장의 영업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제일이 거래상대통화국 외환시장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양 시장이 동시에 개장하는 첫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2. 원화가 개재되지 않은 이종통화간 거래의 경우 1 항의 원칙에 따라 결제일을 정한다.

제 38 조 임시휴일

외환거래의 결제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될 경우 새로운 결제일은 임시휴일 다음 첫 영업일로 한다. 다만, 임시휴일 다음 첫 영업일이 익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시휴일 직전 영업일을 새로운 결제일로 한다.

제 39 조 지급결제

1. 외환거래에 따른 지급결제 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지급결제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결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원화의 결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이용하거나 수표 교환에 의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 40 조 지원부서(back office)의 분리*

1. 외국환은행은 거래실행부서(front office)와 지원부서(back office)의 담당업무 및 보고체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조직을 운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양 부서가 독립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거래실행부서와 지원부서의 사무실은 서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III - 1 Back office location & Segregation of duties) 참조

제 41 조 서울 외환 시장에서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화자금거래

1. 외화자금거래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거래종류는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 Next(S/N), Week, Month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거래통화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등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 거래금액은 미국 달러화 10 만달러, 일본 엔화 10 백만엔, 영국 파운드화 10 만파운드, 유로화 10 만유로로 하며, 거래 단위는 미국 달러화 10 만달러, 일본 엔화 10 백만엔, 영국 파운드화 10 만파운드, 유로화 10 만유로의 배수로 한다.

3. 인도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익영업일(Value Spot)로 한다.

다만, Overnight(ON)는 계약체결 당일, Tomorrow Next(T/N)는 계약체결 익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4.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1 년을 360 일로 하며, 이자율은 연리(年利)로 표시하고 최소단위는 1/32%를 원칙으로 한다.

5. 만기일은 인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정하되, 만기일이 해당 통화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새로운 만기일로 한다.

제 42 조 국제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 등의 준용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국제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표준계약 등 시장관행에 준하여 거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범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은행간 외환거래 지침』 (1989 년 12 월 1 일,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제정)은 폐지한다.

<부 록> 용어 정의**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XI Market Terminology) 참조

PART I : 외환 시장과 외화자금 시장에서의 거래 용어

(다만, *표시는 외환 시장에서만 사용)

Mine, I buy*, I take:

외환 시장 : 제시된 환율(offered rate)로 대상통화(Basic currency)를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도/선물환 매수)

외화자금 시장 : 제시된 금리(offered rate)로 차입하겠다는 의사 표시

Yours, I sell*, I give:

외환시장: 제시된 환율(bid rate)로 대상 통화를 매도하겠다는 의사 표시

(다만, 스왑 거래에서는 현물 환 매수/선물 환 매도)

외화자금시장: 제시된 금리(bid rate)로 자금을 공여하겠다는 의사 표시

Given:

bid 에 대해 offer 가 제시되어 거래가 성립되는 것

Taken:

offer 에 대해 bid 가 제시되어 거래가 성립되는 것

Join.. at, Support at:

브로커가 고시한 bid/offer rate 에 추가 주문을 내겠다는 의사 표시

Off:

기존의 bid/offer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

Bid, Buy*, Pay:

외환시장 : 대상통화의 매수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도/선물환 매수)

외화자금시장 : 차입

Sell*, Offer:

외환 시장 : 대상 통화의 매도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수/선물환
매도)

외화자금시장 : 자금 공여

Under reference:

거래의 성립에 앞서 고시된 rate 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Either way, Choice, Your choice:

bid 및 offer rate 가 같음

Done: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의사 표시

Firm, Firm price:

확정 가격

For indication, Indication, For information, For level:

참고 가격

Checking:

신용한도의 확인

Your risk:

제시한 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희망 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의사 표시

My risk:

제시받은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의사 표시

Points: pips*:

환율의 최소 고시 단위

일반적으로

USD/JPY	1/100 th of a Yen
EUR/USD	1/100 th of a U.S. Cent
GBP/USD	1/100 th of a U.S. Cent
USD/CHF	1/100 th of a Swiss Centime (Rappen)

Basis points:

이자율 표시 단위로 1%의 1/100

Premium:

현물환가격과 선물환가격의 차이(선물환가격 > 현물환가격)

Discount:

현물환가격과 선물환가격의 차이(선물환가격 < 현물환가격)

Par:

현물환가격과 선물환가격의 차이(선물환가격 =
현물환가격)

Outright price:

현물가격을 스왑포인트(premium 또는 discount)로 조정한 가격

PART II : 거래기간, 인도일, 만기일에 관한 용어

Spot:

일반적으로 오늘(today)로부터 2 영업일(banking days)후

Regular dates/periods, Fixed dates:

일반적으로 Spot date 로부터 1 주, 1 개월, 2 개월, 3 개월, 6 개월, 1 년 등(경우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에서는 today 로부터)

IMM dates: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의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Division)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선물 계약의 최종결제일로 3 월, 6 월, 9 월, 12 월의 제 3 수요일

Odd/broken/cock dates:

Regular date 이외의 기일물

Short dates:

1 개월 미만 만기

Overnight O/N:

거래당일부터 익영업일

Tom-next T/N:

익영업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

Spot-next S/N:

Spot 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

One week:

Spot 으로부터 1 주일

Tom-week, One week over tomorrow:

익영업일로부터 1 주일

Turn of the month:

월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익월 첫 영업일

Spot against end month, End of the month:

Spot 으로부터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Turn of the year:

연도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익년 첫 영업일

Forwardforward, Fwd/Fwd:

Forward date(spot 보다 장기)로부터 다른 forward date

PART III : 통화옵션 거래관련 용어

American (style) option: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ARO (Average rate option):

행사가격이 특정시점의 기초자산(대상통화) 가격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기초자산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옵션

At-the-money: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과 같거나 매우
근접한 수준에 있는 상태

Buyer (Holder):

premium 을 지급하고 옵션을 매수하는 자

Call option: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가격으로 일정금액의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ompound:

기존의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옵션(option on an option)

Cut off time, expiration time:

만기일에 옵션의 행사권리가 소멸되는 시각

Delivery Date:

인도일(통상, 만기일 2 영업일 후)

Delta: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옵션가격(premium)의 변동비율(hedge ratio)

Delta hedge:

옵션거래에 따른 잠재적인 외환 포지션(옵션금액 \times
Delta)을 헤지하기 위한 외환거래

Digital:

현물가격이 콜옵션(풋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을(낮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옵션거래

Double knock-in:

미리 정한 2 개의 환율 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옵션

Double knock-out:

미리 정한 2 개의 환율 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옵션

Double one touch:

미리 정한 2 개의 환율 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European (style) option:

만기일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Exercise:

옵션 매입자의 권리 행사

Expiration date:

옵션 만기일

Historical volatility:

과거 Data 로 추정된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Style, 만기일, 행사가격, premium, 금리 등을 옵션
가격결정 모형에 적용하여 산출한 옵션의 (내재)변동성

In-the-money:

기초자산의 가격이 Call 옵션(Put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낮은) 상태

Intrinsic value:

In-the-money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현재가격과 옵션 행사가격간의 차 이

Knock-in:

미리 정한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옵션

Knock-out:

미리 정한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옵션

No touch:

미리 정한 환율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기까지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인도일에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One touch:

미리 정한 환율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Out-of-the-money:

기초자산의 가격이 Call 옵션(Put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높은) 상태

Premium, option cost:

옵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가격(premium 은
통상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후 수수)

Put option: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가격으로 일정금액의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Range binary(Double no touch):

미리 정한 2 개의 환율수준보다 낮은 환율수준으로 만기이전까지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일에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Risk reversal:

Call option 매입(매도) 및 Put option 매도(매입)의 조합으로, 이 경우 일반적으로 Call 옵션 및 Put 옵션의 명목금액, 만기, Delta 의 절대값 및 style 등이 같음

Seller (writer):

premium 을 받고 옵션을 매도하는 자

Straddle:

Style, 만기일, 명목금액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Call 옵션과 Put 옵션의 동시 매입 또는 매도

Strangle:

Style, 만기일, 명목금액은 같으나 행사가격이 서로 다른 Call
옵션과 Put 옵션의 동시 매입 또는 매도

Strike price, exercise price:

행사 가격

Synthetic forward:

Style, 만기일, 명목금액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Call 옵션
매입(매도) 및 Put 옵션 매도(매입)의 조합(이 경우 옵션의 행사가격은
선물환가격과 같음)

Time value:

옵션의 시간가치로서, premium 에서 intrinsic value 를 차감한 값

Volatility:

장외(over-the-counter) option 시장에서 사용하는 환율의 표준편차로서 딜러는 미래의 시장가격 변동을 예상하여 volatility rate 를 제시함

PART III : 금리 파생상품 관련 용어

1. Forward rate agreement (FRA)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계약금리(contract rate)와 만기
결제금리(settlement rate)간의 차액을 수수하는 장외 선도금리 계약

FRA buyer:

만기 결제금리가 계약금리보다 높을(낮을) 경우
FRA 매도자로부터(에 대하여) 그 차액을
수취(지급)하는 자

FRA seller:

만기 결제금리가 계약금리보다 높을(낮을) 경우 FRA 매수자에
대하여(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수취)하는 자

2. Interest rate swap (IRS)

명목원금의 수수없이 고정금리에 의한 이자지급 의무와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지급 의무를 상호교환하는 거래

Fixed-rate payer:

고정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변동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자

Floating-rate payer: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고정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자

Currency swap: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거래

3. Interest rate options

Interest rate cap(금리상한계약) :

계약기간중 이자지급시 시장금리가 계약시 정한
금리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cap 매도자가
cap 매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경우
cap 매도자는 cap 매입자로 부터 premium 수취)

Interest rate floor(금리하한계약):

계약기간중 이자지급시 시장금리가 계약시 정한
금리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floor 매도자가
floor 매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Interest rate collar(금리상.):

금리상한계약을 매입(매도)하는 동시에 금리하한계약을
매도(매입)하는 계약

Zero-cost collar:

Interest rate collar 의 일종으로, interest rate cap(floor)의 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premium 과 interest rate floor(cap)의 매도로
수취하는 premium 이 같은 경우

Swaption:

옵션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interest rate swap 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Part V : 기타 용어

Cash Settlement

파생상품거래에서 기초자산의 인수도 없이 계약가격과 만기 결제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방법

EURIBOR:

은행간 유로화 기준금리(유로지역 47 개국 57 개 은행간 패널에서 매일 산출)

LIBOR: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런던 국제금융시장에 소재한 16 개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기초로 산출)

LIBID:

런던 은행간 예금금리

NDFs(Non Deliverable Forwards):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만기시 당초 약정환율과 만기
결제환율간의 차액을 계약당사자간에 수수하는 선물환
거래

REPOS:

환매 조건으로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거래

(2001년 12월 13일 현재)

최종구 외국환평형기금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

이상헌 한국은행	국제국장
김용길 조흥은행	자금운용실장
이종옥 한빛은행	국제금융팀장
이진항 제일은행	자금부장
이종달 서울은행	자금부장
박형재 국민은행	외화시장팀장
김동권 한국외환은행	외화자금부장
성태홍 한국산업은행	자금거래실장
김교성 기업은행	자금운용실장
김기수 광주은행	외환업무팀장
박형근 시티은행	상무이사
김진일 도이치은행	지점장

이왕규 동양현대증권 외화자금팀장

이용재 한국자금중개 외환시장 1부 팀장

김원기 서울외국환중개 총무부장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실무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강한호위원, 한국외환은행
이창훈위원, KOREA FOREX CLUB 이상배위원, 국민은행 노상철위원,
시티은행 한규식위원, 도이치은행 신용석위원 및 서울외국환중개회사
조성범위원, 그리고, 실무소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